

[사 건 명] 행심 2017 - 7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안의 개요

가. 2017. 1학기 중 △△△, ●●●, 청구인이 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일이 종종 있었고, 청구인이 △△△, ●●●과의 단체대화방에 성
인물 사이트 링크를 공지로 게시하기도 하였고, △△△에게 “△△
찌 절벽이지” 등의 말을 올리기도 하였다.

나. 1학기 중반 엽기놀이를 하던 중 청구인이 △△△에게 “너는 성감
대가 온몸이지?” 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7. 09. 30. 청구인과 △

△△, ●●●, 조○○(타학교 학생)가 모인 생일파티 자리에서 청구인이 ●●●에게 “너의 성감대는 허리지?”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의 피해 신고로 2017. 10. 30. 제3차 학폭위에서 ●●●, △△△은 가해학생 처분(특별교육 이수 등)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 조치를 받았다.

라. 2017. 10. 31. ●●●, △△△은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여 학교폭력 신고하였다.

마. 2017. 11. 20. 제4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3일(1시간씩),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관련자간의 상반된 진술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측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적법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쌍방이 주고받은 야한 농담과 사진 등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무시한 채 위원의 주관적 견해로 심리한 처분이다.

나. 사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학폭위 교사위원인 학생생활안전부장

의 참석이 부당하게 배제되었고,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은 2017. 10. 30. 제3차 학폭위 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3차 학폭위 심의결과에 대한 △△△, ●○○○측의 보복 대응으로 여겨진다.

라. 청구인은 학폭위에서 처음부터 가해자로 몰려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제3차 학폭위 심의 결과(2017. 10. 30.)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폭위 개최 유선 통보 시 청구인은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불참 시 대체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일 회의 시작 전 유선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학폭위를 휴정하고 청구인에게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회의 시에도 자치위원들이 청구인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었다.

나. 학폭위에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함께 생일파티 자리에 있던 타학교 친구 조OO 학생을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증언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 적법한 심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학생생활안전부장은 학폭위에서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피 선언을 하였고, 여교사가 사안 조사에 참여한 것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용어나 동영상, 사진에 관해 질문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 여교사와 상담을 하겠다고 사전에 청구인과 피해학생측에 전화로 양해를 구했고 청구인에 대한 배려였다.

라. 본 사안은 2017. 10. 30. 제3차 학폭위 건과는 관련 학생들만 동일할 뿐 내용은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며, 청구인도 피해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먼저 호기심을 유발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체 대화방에 성인사이트 링크를 여러 건 전송한 사실이 있는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 각 제출된 증거,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과 ○○○, △△△은 ○○중학교 2학년 4반 학생들로, 1학기 때 부터 서로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기도 하고, 서로 성적인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청구인은 1학기 중반 엽기놀이를 하던 중 △△△에게 “너는 성감대가 온몸이지?” 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7. 09. 30. 청구인과 △△△, ○○○, 조○○(타학교 학생)가 모인 생일파티 자리에서 청구인이 ○○○에게 “너의 성감대는 허리지 ?”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체 대화방에 △△△에 대해 ‘△△찌 절벽이지’ 라고 하거나 성인물 사이트를 공지로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서양남자, 흑인남자 성기에 대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7. 8. 16.에는 △△△에게 청소년 관람불가인 영화 ‘리얼’ 동영상을 보내주었고, 2017. 8. 17.에는 ○○○에게 위 영화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

청구인의 피해 신고로 2017. 10. 30. 제3차 학폭위에서 ○○○, △△△은 가해학생 처분(특별교육 이수 등)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 조치를 받자 다음날인 2017. 10. 31. ○○○, △△△은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피청구인은 2017. 11. 20. 제4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3 일(1시간씩),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조치를 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조치가 적정한지 살피기로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상반된 진술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근거자료를 무시한 주관적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참석이 부당하게 배제되었고,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중립적이지 못했고, 청구인은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절차 진행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 ●●●이 청구인의 신고로 2017. 10. 30. 제3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처분(특별교육 이수 등)을 받자 △△△, ●●●이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보복대응으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보복 대응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할 때 청구인과 △△△, ●●●이 2017. 1학기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일이 종종 있었고, 청구인이 △△△, ●●●과의 단체 대화방에 성인물 사이트 링크를 공지로 게시하기도 하고 △△△에게 청소년 불가 영화 동영상을 보내기도 한 점, 남자 성기에 대한 발언을 한 점, 1학기 중반 엽기놀이를 하던 중 청구

인이 △△△에게 “너는 성감대가 온몸이지?” 라고 말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청구인의 각 행위에 대해 △△△, ●●●은 서로 재미를 느끼거나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성적 수치심까지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2017. 09. 30. 청구인과 △△△, ●●●, 조OO(타학교 학생)가 모인 생일파티 자리에서 청구인이 ●●●에게 “너의 성감대는 허리지?”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 ●●● 외에 타학교 학생인 조모 학생도 있는 자리였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찌 절벽이지” 라는 말을 올려 △△△의 가슴이 작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때 △△△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청구인과 ●●●, △△△ 등이 1학기부터 친하게 지내오면서 청구인이 ●●●, △△△ 등과 성적 대화, 농담, 교복치마 들추기, 개인 또는 단체 대화방을 통한 성적인 대화, 이미지, 동영상 등을 공유해 오면서 서로 재미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 △△△이 청구인의 위 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긴 하였지만 그 정도가 심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학기 들어서부터 ●●●과 △△△이 체육시간에 남자 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의 치마를 들추고, 청구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체육복 윗도리와 책상에 성적 단어를 써놓는 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괴롭힌 사실이 있고, 그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가 열려 피청구인으로부터 가해자 처분조치를 받은 직후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과 △△△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자신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조치는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3일(1시간씩),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를 주문과 같이 『서면사과』로 변경한다.

V. 결어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조치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